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8020025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08.11.05 footshop99@thefootshop.co.kr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1.22



정 보 공 개 서

(주)더풋샵컴퍼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주)더풋샵컴퍼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7, 3층(청암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2-6677-8888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2-6667-8888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더풋샵 컴퍼니	더풋샵 (THE FOOT SHOP) 외 1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7, 3층 (청암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02.08.	2022.02.14.	조규상	02-6677-8888	02-6677-1788
	법인등록번호	110111-8191035	사업자등록번호	701-88-02263	

당사는 기존 가맹본부인 (주)더풋샵컴퍼니가 물적 분할되어 설립되었는데, 기존 (주)더풋샵컴퍼니가 주식회사 청암168로 상호가 변경됨과 동시에 현 가맹본부인 (주)더풋샵컴퍼니가 분할신설되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조규상/ (주)더풋샵컴퍼니	더풋샵 외 1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7, 3층 (청암동)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규상	02-6677-8888	02-6677-1788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장극륜/ (주)더풋샵컴퍼니	더풋샵 외 1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7, 3층 (청암동)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규상	02-6677-8888	02-6677-178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

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됨)	(주)청암168	더풋샵	2022.02.08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7, 3층(청암동)	송시영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주)위플코리아	뉴가닉테라피	2023.06.01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7, 3층 (청암동)	송시영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더풋샵』 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더풋샵	대한민국 대표 화장품 판매 및 발 관리 전문 프랜차이즈
상 호	더풋샵 ○○점	
상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180300호 (2009.01.20)
상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0818957호 (2010.04.05)
상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0263481호 (2013.07.09)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	---	--

[더풋샵 영업표지 홍보]

 	 	
	대한민국 NO.1 풋케어 전문샵 THE FOOT SHOP 더풋샵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3,017,767	2,725,565	292,202	2,273,694	60,403	122,901
2022년	2,570,183	2,400,882	169,300	2,167,201	-58,369	69,300
2021년	-	-	-	-	-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가맹사업(더풋샵) 외, 건물 임대업도 하고 있으며, 당사의 매출액은 가맹사업 별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받는 로열티, 가맹점 개설 수입 및 수수료, 양도수익,매장에 공급하는 상품 판매액으로 구성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조규상	대표이사	2023.03.~현재	(주)더풋샵컴퍼니 대표이사	업무총괄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장극륜	사내이사	2022.02.~현재	(주)더풋샵컴퍼니 사내이사	업무집행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	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더풋샵컴퍼니	가맹사업경영	2023.06~현재	뉴가닉테라피(등록번호:20230764)이

				라는 영업표지의 화장품판매 및 피부관리 전문 가맹사업 경영
--	--	--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 및 등록번호	출원인	존속기간 만료일
	상표	등록 제0180300호 (2009.01.20.)	출원 2008-0000200 (2008.01.04.)	(주)더풋샵컴퍼니	2029.01.20.
	상표	등록 제0818957호 (2010.04.05.)	출원 2008-0043176 (2008.09.04.)	(주)더풋샵컴퍼니	2030.04.05.
	상표	등록 제263481호 (2013.07.09.)	출원 2012-0025380 (2012.07.26.)	(주)더풋샵컴퍼니	2023.07.09.
	디자인	등록 30-0806928호 (2015.07.15.)	출원 제30-2015-0017680호 (2015.04.07.)	(주)더풋샵컴퍼니	2035.07.15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더풋샵』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07년 10월 18일

2. 『더풋샵』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애니버서리	더풋샵	진은정	2006.01.01.~ 2010.10.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60
(주)더풋샵	더풋샵	진은정	2010.10.14.~ 2012.04.14.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53 DMC 이안2단지 오피스동 15층
(주)스킨애니버서리 스파	더풋샵	진은정	2012.04.15 ~ 2013.03.31.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53 DMC 이안2단지 오피스동 15층
(주)스킨애니버서리 스파	더풋샵	진은정	2013.04.01 ~ 2016.06.03.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3006(상암동, DMC 상암2단지)
(주)더풋샵	더풋샵	진은정	2016.06.03 ~ 2018.07.22.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7, 3층(청암동)
(주)더풋샵 컴퍼니	더풋샵	진은정	2018.07.23. ~ 2020.01.07.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7, 3층(청암동)
(주)더풋샵 컴퍼니	더풋샵	송시영	2020.01.08. ~ 2022.02.08.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7, 3층(청암동)
(주)청암168	더풋샵	송시영	2022.02.08.~2 022.02.08.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7, 3층(청암동)
(주)더풋샵컴퍼니	더풋샵	송시영	2022.02.09. ~2023.03.21.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7, 3층(청암동)
(주)더풋샵컴퍼니	더풋샵	조규상	2022.03.22. ~ 현재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7, 3층(청암동)

3. 『더풋샵』 업종

영업표지	업종	
더풋샵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	화장품판매 및 피부관리, 발관리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더풋샵』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3.12.31.			2022.12.31.			2021.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45	145	0	143	143	0	139	139	0
서울	74	74	0	76	76	0	78	78	0

부산	-	-	-	-	-	-	-	-	-
대구	1	1	-	-	-	-	-	-	-
인천	11	11	-	10	10	-	8	8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3	3	-	3	3	-	1	1	-
경기	54	54	-	52	52	-	51	51	-
강원	-	-	-	-	-	-	-	-	-
충북	2	2	-	2	2	-	1	1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더풋샵』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	143	10	7	1	19	145
2022	139	9	3	2	19	143
2021	153	2	13	3	24	139

6. 『더풋샵』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더풋샵]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3.12.31.	2022.12.31.	2021.12.31.
가맹본부	(주)더풋샵컴퍼니/조규상	뉴가닉테라피	20230764	화장품판매 및 피부관리	1/0	0/0	0/0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45	437,802	10,109	1,108,542	32,546	120,071	2,167	6개 매장

								제외
서울	74	483,201	11,505	1,108,542	32,546	120,071	4,611	-
부산	-	해당없음	-	-	-	-	-	-
대구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인천	11	363,847	7,366	812,683	16,197	193,155	4,689	-
광주	-	해당없음	-	-	-	-	-	-
대전	-	해당없음	-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
세종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기	54	396,712	9,008	845,307	30,697	122,332	2,167	-
강원	-	해당없음	-	-	-	-	-	-
충북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	해당없음	-	-	-	-	-	-
전북	-	해당없음	-	-	-	-	-	-
전남	-	해당없음	-	-	-	-	-	-
경북	-	해당없음	-	-	-	-	-	-
경남	-	해당없음	-	-	-	-	-	-
제주	-	해당없음	-	-	-	-	-	-

당사의 가맹점 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아하소프트)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특히 당사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 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2023년 6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6개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145개가 아닌 실제 139개 매장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더풋샵』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더풋샵』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145	2831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더풋샵』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더풋샵]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부담하는 기준은 [V-9]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광고	소계	2023.01~2023.12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 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AFPK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1층(상암동, DMC상암2단지)	02-6393-200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더풋샵』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더풋샵』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직원채용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가맹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개점 행사비(홍보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인테리어 비용	가맹본부에 인테리어업체의 알선을 요청한 경우	해당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가맹점사업자가 임의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한 경우	해당업체		
필수 설비 장착물	자율선정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초도 물품비용	가맹본부 / 협력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해당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가맹금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9,900	계약 체결 후	①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시 ② 가맹계약서 제13조 ②항의 조건 충족 시	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② Know-how 전수, 개업 교육, 개설지원 등은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점포 개설시에 소멸된 것으로 보아 반환하지 않음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2,200	계약 체결 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시	교육 시작 시 반환 안됨.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보증금	4,000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 시		이자는 없음
개점행사비	6,600	계약 체결 후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취소 시	영업개시 행사를 위한 소요된 실제 비용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합 계	[22,700]				

① 가맹계약 해지된 때에는 가맹본부는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잔존채무액 및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잔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고 정산서를 교부한다. 단,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내·외부의 상호, 서비스표 등 가맹본부와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 제11조 1항 1~14항의 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하도록 한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 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보증금 (현금)	[4,000]	계약 체결 후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화장품 대금 및 로열티, 고객프로그램 사용료, 금융상의 채무액, 가맹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손해 배상액 등	귀책사유 없을 시 전액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단위 : 천원)	부가세
가 입 비	[9,900]	포함
교 육 비	[2,200]	포함
개 점 행 사 비 (홍 보 비)	[6,600]	포함
보 증 금	[4,000]	없음
합 계	[22,7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 132m² (40평) 기준)

구 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합 계		104,500 (40평 기준)	2,511.5	-	-	-
본사가 알선한 경우 인테리어 (내, 외부)	협력업체	57,200 (40평 기준)	1,430	계약선금50% 중도금40% 잔금10%	공사 전 계약취소	30평 미만 1,540
가맹점사업자가 알선한 경우 인테리어 (내, 외부)	자율선정					
도면설계도작성 인테리어디자인 컨셉 제공 등	가맹본부	22,000 (40평 기준)	550	계약선금50% 중도금40% 잔금10%	공사 전 계약취소	본사직원 시공전체 감독
필수설비 장착물	자율선정	외부간판 기본크기 1,100	27.5	계약선금50% 중도금40% 잔금10%	설치 전 계약취소	m ² (회배)당 500 추가 기타 옵션 가맹점 주 부담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 협력업체	24,200 (40평 기준)	605 (40평 기준)	계약선금50% 중도금40% 잔금10%	상품 미공급시	쇼 파, 배 드, 발 관 리 제품 등 계약서 상 명기된 물품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 규모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 최초 공급비용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당사 영업팀 (전화:02-6677-8888)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 하면 승인계약, 동의하지 않으면 재 진행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피고용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화장품 판매 및 고객센터서비스에 적합한 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화장품 판매 및 고객센터서비스에 적합한 자,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 일 것
종업원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 자를 취득한 자 (예, F2, F2-1, F5, F6)	만18세 이상일 것 청결 및 서비스, 품위를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당사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의료법등에 대한 완벽한 이해등 계약서 제39조[양해사항]에 동의 및 기타 가맹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더풋샵』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	잔금
금액 (천원)	46,200	총액의 50%	총액의 40%			총액의 1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14일			계약일+21일
비고	잔금 미납시 초도물품 일체 미 입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정보공개서 V-9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770, 단 전월 매출액이 50,000 이상인 경우 매출액의 2.2%	익월 10일		당해 기간 경과 때에 반환 안됨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총액의 50%를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총수에 대비하여 분담	분담금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 집행시 반환 안됨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계약서 37조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9]페이지 참조
모바일상품 권수수료분 담금	가맹본부	상품권 판매액의 33.3%	익월30일			모바일상품권 사용은가맹점 선택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당사가 가맹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재고관리	실제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월1회	문의 : 영업관리팀 (02-6677-8888)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매장운영	매장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체크리스트 작성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추가 교육비	협약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약하여 부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 하지 않을 경우		점포이전 합의시
합 계	[-]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안에 따라 가맹비 및 로열티가 증감 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안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증감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

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더풋샵]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더풋샵컴퍼니]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2,200천원](부가세포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4,000천원](부가세 없음)(양도인의 계약 보증금으로 대체가능)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가맹비 [9,900천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양도양수 경우 가맹비 [9,900천원](부가세포함)은 면제 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4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 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① 계약 종료 후 가맹점 사업자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미처리 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주)더풋샵컴퍼니의 운용 시스템, 매뉴얼의 사용을 금지 합니다.
- 상표, 서비스표, 표장, 기호, 라벨, 간판 등 일체의 영업표시의 사용을 금지 합니다.
- 간판 등의 일체의 영업표시는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철거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한 물품 중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점사

업자의 처분권을 제한할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물품은 가맹본부와 협의한 후 처분하여야 합니다.

- 전화 안내 멘트 중 더풋샵의 상호 및 기타 유사한 안내문은 삭제 하셔야 합니다.
- 고객관리프로그램 해제 및 메뉴판 삭제(프로그램 내용 및 더풋샵에서 사용되는 관리용어 삭제)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더풋샵』가맹점이라는 것을 공중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당사가 제공한 모든 매뉴얼 및 운영양식, 보고서,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를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하지 못합니다.

③ 계약 종료 및 양도 양수, 폐업 시 정액권매출의 잔액에 대하여는 모두 가맹사업자의 선수금으로써 모든 책임은 가맹사업자에 있으며 가맹사업자가 책임을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가맹본부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이행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한 후 반환하도록 합니다.

④ 상기 계약종료 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 7일 이후부터 가맹사업자는 영업매출액의 20%를 위약벌로 가맹본부에 배상해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더풋샵』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더풋샵]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	-	-
-	-	-	-	-
-	-	-	-	-
계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더풋샵』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당사가 [더풋샵]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서비스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별첨. 상품 및 용역] 참조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이상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변동사항을 즉시 알려주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상품 및 서비스 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변동사항을 즉시 알려주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별첨. 상품 및 용역] 참조		변경시 통보	2022년 7월 기준

(유무선,이메일등)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화장품 판매, 피부관리, 발관리 등을 취급하는 업종	더풋샵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점포 소재지로부터 반경 500m	계약서 별지에 구역(지도) 표시

가맹계약(신규)시 해당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맹희망자와 협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최소 100M에서 500M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으며, 조정된 내용은 특약사항과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한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더풋샵』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더풋샵]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주)카카오	카카오톡	상품권	-
온라인	(주)케이티알파	www.giftishow.com	상품권	-
온라인	(주)현대이지웰	www.hyundaiezwel.com	상품권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9.99%	0.01%	-	0.01%

기타 오프라인 매출은 가맹본부에서 판매하는 지류 상품권 매출임.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더풋샵』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의 연장은 반드시 재계약을 통하여만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계약의 갱신은 가맹사업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내용과 절차에 따르며, 이때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갱신 시 갱신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로열티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9조2항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9조 2항 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하지 못한 경우	9조2항3호의 가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9조2항3호의 나
○ [더풋샵]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9조2항3호의 다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9조2항3호의 라
○ 본사에 대한 상품대금, 대여금, 로열티 및 기타비용 등 모든 금융상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본사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9조3항3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이외의 제3자와 동종의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한 때	10조 2항 1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더핏샵 가맹점의 경영의사를 포기한 때	10조 2항 2호
○ 당사의 갱신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1조 1항 1호
○ 가맹비, 교육비, 상품대금 등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11조 1항 2호
○ 필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1조 1항 3호
○ 동의 없이 영업양도나 승계, 담보제공, 사업장위치를 변경한 경우	11조 1항 4호
○ 로열티를 3회 이상 연체 할 경우	11조 1항 5호
○ 상호협약하거나 약정된 광고나 판촉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11조 1항 6호
○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 보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11조 1항 7호
○ 고객센터불량과 제품관리, 처리의 미숙으로 소비자에게 년3회 이상의 항의가 있는 경우	11조 1항 8호
○ 필수품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수품목'의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반한 경우	11조 1항 9호
○ 판매상품의 종류, 판매방식, 적정재고유지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 삭제한 경우	11조 1항 10호
○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나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11조 1항 11호
○ 계약서 제19조[운영매뉴얼 준수 및 감독.시정요구권] 각 항을 위반하거나 가맹본부의 시정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할 경우	11조 1항 12호
○ 계약서 제28조[지도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 1항, 2항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11조 1항 13호
○ 기타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 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11조 1항 1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

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11조 2항 1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11조 2항 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11조 2항 3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11조 2항 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1조 2항 6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11조 2항 7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11조 2항 8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1조 2항 9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11조 2항 10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이 계약의 내용은 계약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40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계약기간 중 계약서의 내용 변경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며, 갱신계약시 변경된 계약서 내용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양도 예정일 2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영업팀 02-6677-8888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 동안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 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계약기간이 아니라 완전한 계약기간이 제공되며, 양수인은 가맹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

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당사 담당팀검토 면담포함, 약30일가량 소요→승인여부 통지→계약체결(5일소요)→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시 교육비는 당사에 입금
대리 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 면담포함, 약30일가량 소요→승인여부 통지→계약체결(5일소요)→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시 교육비는 당사에 입금
업무 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더풋샵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더풋샵』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더풋샵 판매상품(서비스)과 동일한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7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영업팀 02-6677-8888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더풋샵』의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11:00-익일새벽 05:00	매월 26일(2월은 24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고	문의 : 영업팀

(18시간)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02-6677-8888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 고
4명 이상	직접 근무	가맹점주의 판단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상황에 따른 본부의 지시에 따름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 고
매장 청결(12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1월	본사 영업관리팀	
친절도(13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필요시	본사 영업관리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필요시	본사 영업관리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더풋샵』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성 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 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행사	상품광고	광고비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 수에 비례하여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사업자와 광고내용 협의의 과정→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7일 이내 입금→ 광고 진행 → 가맹사업자의 사용내역 요청 시 내역서 발송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행사)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 수에 비례하여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행사		통일적인 홍보물 등의 디자인, 시안 등의 제작비용 100%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제공하는 경품,기념품, 팜플렛,전단지 등의 홍보물의 비용100%	행사 계획 공고 → 디자인 및 기념품 등 시안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통보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불참 시 서면 통보)	월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가맹점사업자의 총수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지역단위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위한 팸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기타 판촉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계획과 소재 등을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당사의 대표전화와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가맹사업자는 판촉시행 2개월 전에 가맹본부에게 할인 판매 할 상품의 명칭과 할인비용 등이 적힌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가맹본부가 위 1개월 이내에 응답을 발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의 판촉활동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가맹사업자는 더뎡샵 가맹사업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개별 판촉활동 및 광고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행위가 이에 벗어나는 경우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당사의 계약서 제16조(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점포개설 후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되 그 위약금은 다음과 같다.

[일금 칠십만원(₩700,000)×계약기간 잔여월수]-[가맹계약서 제12조 제3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보증금에서 공제된 손해배상액]

- ② 점포개설 전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10조 1항의 총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며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13조1항의 가맹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위약금의 지급은 가맹비에서 이미 제공한 서비스 대가를 공제 하고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갑" 또는 "갑"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갑"은 배상 의무를 진다.

[참조]

계약서 10조1항 "을"은 본 계약서를 체결한 즉시 선금을 납입해야 하며 선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효력은 소멸되며 계약무효에 따른 손해금으로 총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해야한다.

계약서 13조1항 "을"은 본 계약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맹비(가입비) **일금 구백만원(₩ 9,000,000)(부가세 별도)**과 최초교육비 **일금 이백만원(₩2,000,000)(부가세 별도)**을 "갑"에게 지급한다. 본 가맹비는 "갑"의 영업표지, 상표권을 부여하고 사용하는 가입비의 대가이며 매월 납입하는 로열티와는 별개이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45일 내외	122,8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22,700
가맹금 예치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인테리어 공사	- 도면작성 및 공사일정 협의 - 공사 실시 (계약내용에 따라 다름)	D-24(1일) D-24~5(20일)	100,10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

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 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없음 (신규 오픈 매장 해당)	오픈일 전후 7일간	600만원 한도	
판촉지원	매장 홍보를 위한 이벤트 실시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협의,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관 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 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요원 등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 개선방안을 설명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협의, 부담	문의 : 영업관리팀 02-6677-8888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관 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 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 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 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설명	가맹점 부담(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더풋샵』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더풋샵』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최초개설교육 (이론 교육)	회사 소개 시장현황, 매뉴, CS, 아하 프로그램 사용, 입금 방법 등	개별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운영 및 특별교육 (실습 교육)	더풋샵 관리 메뉴 및 고객응대	영상 및 실기테스트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세법, 의료법 개정 및 당사 방침	회의 및 공지방식	상황에 따라	수시 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더풋샵』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최소시간	비 용	비 고
최초개설교육 (이론 교육)	2일	1,100	최초 계약 시 필수이수
운영 및 특별교육 (실습 교육)	2일	1,100	최초 계약 시 필수이수
수시 교육	상황에 따라 변동	없음	법 개정 및 본사방침 전달 시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여 당사가 지정한 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필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1조에 따라 일주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최초 개설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7조6항에 따라 가맹점 개설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본부(02-6677-888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상품 및 용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